

2017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조치 결과

| 번호 | 감사대상 | 처분요구 | 지 적 내 용 | 조 치 결 과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-1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16.06.27~07.01) | 개선(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공헌사업의 사후 진단평가 관리 부적정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▽▽▽▽팀은 사회공헌사업의 실효성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조사만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진단평가 관리가 미흡함 - 지적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▽▽▽▽팀장은 사회공헌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성 있는 사후 진단평가 제도를 마련하고, 사후 진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것(개선) | - 개선(1) · 사후진단 평가제도 마련 예정 (17년 12월 제도 및 규정 개정) |
| 1-2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16.06.27~07.01) | 시정(1) 개선(2) 주의(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공헌사업 관련 의사결정기구 운영 부적절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▽▽▽▽팀은 심의위원의 이익충돌방지 장치와 위원회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운영 간 평가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 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이 미흡함 - 지적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▽▽▽▽팀장은 회의록 발언 위원 실명기재·정정 하고(시정), 이익충돌방지 장치, 위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운영 규정에 반영할 것(개선), 또한 사업지원 심의시 합리적인 평가기준 수립, 위원평가 왜곡 가능성, 지원기준 점수의 적정성 등을 고려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간 소집 통지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(개선,주의) | - 시정(1)개선(2)주의(1) · 회의록 '발언위원실명기재/정정 및 사회공헌위원회소집 통지기준 준수' 관련규정'개정 완료 및 이익충돌 방지와 청렴성 확보를 위한 '제도마련 및 관련규정반영 합리적인 '평가기준 수립 및 관련규정 반영 (2017. 7월 개정) |
| 1-3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16.06.27~07.01) | 개선(2) 주의(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부금 정산 기준 미비 및 결과보고서 처리 미흡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정금액 구간 기부사업의 일상감사 시 결과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처리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며, 결과 보고서 제출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부금의 집행관리가 부실함 - 지적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▽▽▽▽, ◎◎◎◎팀장은 기부금 결과보고서 제출 기준을 재수립 및 결과보고서 기간 내 미제출시 사전 일정 조정하는 등 규정 및 지침을 통해 방안을 마련 할 것(개선2), 또한 기부사업에 대해 시행 전 이행확인서를 작성과 사업 내용 변경 시 사전승인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비용 집행을 투명하게 진행 할 것(주의2) | -개선(2) · 기부금 결과보고서'제출기준 재수립 및 관련규정 반영예정 (2017. 7월 개정) - 주의(2) · 기부사업 '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준수'완료 (이행확약서 징구, 사업계획 변경 사전승인 등) |

| 번호 | 감사대상 | 처분요구 | 지 적 내 용 | 조 치 결 과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
| 1-4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16.06.27~07.01) | 개선(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공헌 조직 간 역할조정 미흡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회공헌 유사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 분산 시행되어 수혜대상이 중복 될 수 있는 등 효율적 사회 공헌 운영을 위해 조직간 명확한 역할 분담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- 지적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▽▽▽▽팀장, ○○○○팀장은 유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직간 역할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의 수행 주체를 조정할 것(개선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개선(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회공헌 조직간 '사업주체 조정'예정 (2018년 추진사업적용예정) |
| 1-5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16.06.27~07.01) | 개선(1) 주의(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사랑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사랑 카드 사용 간 활동일과 사용일 불일치와 구매물품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흡함에도 추가 소명내용 없이 승인하는 등 봉사활동 담당자의 관리감독이 부실함. - 지적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봉사단 사용 소모품의 구매방법, 보관기준 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담보 방안 마련과(개선), ▽▽▽▽팀장은 지역사랑카드 사용일이 상이한 경우 사유서 등으로 목적 사용 부합여부를 확인하고, 구매물품의 증빙자료, 지원 대상, 지급 확인 등 활동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자료 받은 후 비용진행을 승인 할 것(주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선(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사랑카드사용의'목적 부합여부 확인 등 투명한 비용집행 승인'포함 규정 개정(2017. 7월 개정) - 주의(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회봉사단 사용물품 구매 및 일괄관리방법'개선 (2017. 7월 개정) |
| 1-6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16.06.27~07.01) | 징계(1) 주의(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봉사활동비 사용승인을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관련 업무 부당처리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회봉사단 코디네이터가 당사 봉사활동 승인기준에 맞도록 허위증빙 자료(인원, 시간 및 활동사진등) 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 - 지적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봉사활동 증빙자료 허위 작성 후 봉사활동비 부당하게 사용한 ★★★★★팀 고○○대리를 엄중 문책 할 것(징계), 또한 지역사랑카드 오사용에 사고 미보고 및 환수사유로 자체 종결 처리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☆☆☆☆실 정○○부장 주의 조치할 것(주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징계(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□□□□팀 고○○대리 (감봉) - 주의(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□□□□실 정○○부장 주의조치 |

| 번호 | 감사대상 | 처분요구 | 지 적 내 용 | 조 치 결 과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|
| 1-7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16.06.27~07.01) | 개선(2) 주의(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봉사단 운영 및 관리 부적정 - 내 용 · 봉사단 중 28개 봉사단은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, 활동비 지원범위 기준이 불명확하여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았으며, 사회봉사단 봉사활동비 지원범위 및 기준이 부적정 하였음 - 지적사항 · ▽▽▽팀장은 자발적 봉사활동이 정착되도록 봉사단 운영전반의 개편방안을 수립 시행 하고(개선), 실적이 없는 봉사단의 적정 운영방안, 활동비의 지원기준 등 재정립하여 내실 있는 사회봉사단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(개선), 또한 계획 승인 시 효과성 검토와 계획 대비 활동결과 이행여부 및 적절성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승인 할 것(주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선(2) · 사회봉사단 운영전반 개편 방안 수립 지침반영 및 내실 있는 지원방안 수립예정 (2017. 7월) - 주의(1) · 봉사활동 계획대비이행여부 점검 및 적절성 검증 예정 (2017. 7월) |
| 1-8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16.06.27~07.01) | 개선(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용역 수의계약 자격 기준 불명확에 따른 불합리 - 내 용 · ♡♡♡♡팀은 특정 지역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 자격 기준을 대상기업의 '주민자치성'을 필수자격 조건의 과점주주의 판단기준을 불명확하게 정의하여 소수의 과점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주민 자치성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- 지적사항 · ♡♡♡♡팀은 '주민자치성' 조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할 것(개선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선(1) · 특정 지역용역 수의계약기준 개정(조문내용, 우선주와 자기주식 취득비율 등 명확화) (2017년 12월 예정) |
| 1-9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16.06.27~07.01) | 주의(3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구매 견적서 수령 부적정 및 행사물품 재고관리 부실 - 내 용 · ♡♡♡♡팀은 업무편의사유로 한 업체에서 타 업체의 견적서까지 수령하는 등 계약업무가 부적정 하였고, 행사목적으로 구입물품의 경우 재고와 사용수량이 불일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였음 - 지적사항 · ♡♡♡♡팀은 한 업체로부터 타 업체의 견적서까지 수령한 직원은 엄중 훈계하고, 계약업무 담당하는 직원관련 규정을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할 것 (주의), 자체행사 진행을 위해 구매한 물품의 경우 입·출고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,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, 자체행사 진행을 위해 구매한 물품의 경우 입·출고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히 하여 목적 외 사용 않도록 하기 바람. (주의 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주의(3) ·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 철저 및 사업계획(물품구매)사전검토 철저로 불필요물품 구매 지양 |

| 번호 | 감사대상 | 처분요구 | 지 적 내 용 | 조 치 결 과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|---|
| 1-10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*16.06.27~07.01) | 개선(3) 주의(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이원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 및 관리 부실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이원포인트 운영을 위한 기준 및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며, 고지내용이 내부문서에만 포함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하며, 1년 이상 거래 미 발생 가맹점의 관리가 부실함 - 지적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○○○○○팀장은 가맹점고지 또는 의무사항 누락과 내용이 불분명한 조항 등 개정과(개선) 장기간 미거래 가맹점현황을 파악 조치하고 향후 장기간 미거래 가맹점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(개선), 또한 가맹점 제한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방안을 검토 하고(개선), 가맹점 해지 철회 등 시스템 정보변경 시 사내 처리절차를 준수 및 시스템정보변경 등 임시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요청부서의 자료입출력요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(주의 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선(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 개정 검토 및 가맹점심사 및 등록 준수사항 강화 예정 또한 장기간 미거래 가맹점 조치 및 1년이상 비매출 가맹점 관리 철저 이행(2017. 7월) - 주의(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맹점 해지 철회 등 시스템 정보변경 시 사내 처리절차 준수 시행 하고, 현업부서로부터 시스템정보수정요청 시 반드시 근거확보 후 처리진행 |
| 1-11 | □□□□실 종합감사 (*16.06.27~07.01) | 현지조치 (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공헌실 출장처리 부적절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조 출장시에 일비를 지급받거나 회사차를 이용 출장함에도 일비를 지급받거나, 식사제공 교육 출장시 식비를 지급받거나, 휴일 출장 시 일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있음. -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인된 부적정 출장비 수령액에 대해 환수조치 할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지조치(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자 출장비 과다지급 환수 완료. |
| 2 |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(*16.11.07~11.25) | 개선(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1. 고객접점부서와의 협의체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○○팀은 구축 자동추출시스템을 기초로, 자체분석 통한 자금세탁의심거래 보고 수행시 드롭이나 환전 거래 관련 접점부서와의 협업이 미흡한 것을 판단됨 2. 의심스러운거래 추출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○○팀은 자금세탁의심거래 추출을 위해 추출기준을 수립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추출을 하고 있으나 추출기준과 전산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. -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○○팀과 XX팀은 유기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상호 정기적인 의견교류를 진행하고(개선), 의심거래추출기준을 정확한 반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, 보고대상 확정·제외 시 합당한 근거에 의하고, 현 추출기준의 기준수치를 조정하여 유효성을 높이기 바람(개선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선(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협의체 구성 완료 및 추출조건 항목별 적정성 및 조건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추출프로세스 개선예정, 추출 목록 대해 확정·제외 시 근거에 의해 처리 하도록 개선함 |

| 번호 | 감사대상 | 처분요구 | 지 적 내 용 | 조 치 결 과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3 | 제19기 사업연도 회계감사 (17.1.31.~2.06) | 개선(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9기 사업연도 회계감사 1. 시산표 계정과목 등 조정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산표상의 세부계정과목 중에서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전산상 조정이 필요하고, 일부 전신전화가입권과 △△가입보증금에 대한 실제성 평가가 필요함. -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□□팀장은 시산표 세부계정과목 중 잔액이 음수인 건들에 대하여, 음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금액 조정 또는 계정사용중지 처리 등 조치하고, 일부 전신전화가입권과 △△가입보증금에 대하여 동 보증금 담당부서로부터 관리현황을 징구하여 자산의 실제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할 것(개선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선(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음수인 세부계정과목에 대해 금액조정 및 대체를 시행하였으며, 보증금 관리부서로부터 보증금의 실제성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할 예정임. |
| 4 | 복무감사 (17.3.20.~3.21) | 현지조치 (4건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사무소 특별복무 점검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 사무소 3곳에 대한 불시 복무점검에 통해 조직기강 확립을 위한 및 복무점검 실시 - 지적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□□사무소 일부직원의 캐비넷 및 책상정리 불량, PC전원 불량이 있었으며, ○○○○팀은 외출기록부 작성을 미흡하게 작성하는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현장시정 조치함(현지조치 4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지조치(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잠금장치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외출기록부 작성 철저 조치 |
| 5 | 청탁금지법 자진신고관련 특정감사 건 (17.4.05.~4.17) | 통보(2) 개선(1) 권고(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관련 특정감사 건 -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회사 내 호텔에서 직원결혼식비용 중 일부금액 처리를 직원 인척이 회원고객 하이원포인트(콤프-카지노 게임간 적립금)로 결제한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자진신고가 접수되어 사실 확인을 실시함 -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♣♣♣♣♣팀 직원 이○○에 대해 관련업무 배제 등 인사조치 참고 조치하고(통보), 고객 김○○과 회원고객 이○○의 콤프 운영관리지침 위반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조치 할 것(통보), 또한 연회장의 콤프정산 서비스가 콤프깡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(개선), 전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강화 바람(권고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보(2)(개선1), 권고(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 ♣♣♣♣♣팀 직원 이○○은 관련업무 배제 조치 및 카지노 출입지침위반 이○○고객 카지노 1년 출입제한조치 완료함 또한 연회장 콤프정산 접수절차 및 범위 변경 하고 청탁금지법 2회 실시(신입,승진자) 추후 다양한 교육시행 예정 |
| 6 | 복무감사 (17.4.26.~4.28)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용 차량관리 실태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업무용 차량 지정 차고지 점검 및 회사자산 사적사용, 금품수수 등 윤리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음 | 특이사항 없음 |